제 1437 호
1989.5.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반 충 남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공문시행
'89 제 1 회착상심사결과통보 ····· 4

◎ 고 시
제 116 호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및해제고시 ····· 10
제 244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지적승인 ····· 10

◎ 공 고
제 435 호 : 도시계획사업 ( 수도 ) 실시계획공람공고 ····· 11
제 439 호 : 관인등록및폐기공고 ····· 11

〈이면계속〉

| 공 | | | | | | | | | | | |
|---|---|---|---|---|---|---|---|---|---|---|---|
| 람 | | | | | | | | |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48 호 : 마포로제 2 구역제 1-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 12
제 449 호 : 을지2가제 15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 13
제 454 호 : 마포로제 4 구역제 6-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 14
제 455 호 : 신문로제 2 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 14
제 456 호 : K·S 표시허가취소 ····· 15
제 467 호 : 서소문구역제 4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을위한공람공고 ····· 15

◎ 구 고 시

제 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 ····· 16
제 8 호 : 도시계획사업 ( 시장 ) 변경시행허가고시 ····· 17
제 11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8
제 42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18
제 43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19
제 44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20
제 45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
제 46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인가고시 ····· 21
제 47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인가고시 ····· 21

◎ 구 공 고

제 16 호 : 관인재교부공고 ····· 22
제 26 호 : 관인사용신조및폐인공고 ····· 23
제 35 호 : 관인사용신조및폐인공고 ····· 23
제 45 호 : 관인사용승인및폐인공고 ····· 24
제 51 호 : 관인사용승인공고 ····· 25
제 52 호 : 관인사용폐기공고 ····· 26
제 56 호 :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준공공고 ····· 27
제 86 호 : 관인교부 ( 재교부 ) 공고 ····· 27
제 86 호 . 관인개각사용 ····· 29

◎ 사업소고시

제 11 호 : 선박운항허가 ..... 31
제 12 호 : 선박운항허가 ..... 31

◎ 사 령

◎ 공지사항

서울시시설공단대표전화번경안내 ..... 35

35-4 제 1437 호 시 보 1989.5.30

# 공 문 시 행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시정 01226-18 (731-6151) '89.5.17.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89 제 1 회 착상심사결과 통보

1. '89 제 1 회 시정발전착상 심사결과 및 시상내역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업무에 참고토록 할것.

첨 부 : '89 제 1 회 착상심사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과 1-72, 서구 1-22, 서사 1-57.

## '89 제 1 회 착상실사 결과

1. 제택착상 현황
   - 접수건수 : 152 건
   - 시상내용 : 7 건 9 명
     - 장려상 : 2 건 3 명 ( 1 건 공동착상 )
     - 노력상 : 5 건 6 명 ( 1 건 공동착상 )
   - 불 채 택 : 145 건

○ 제택착상 내용

| 착상등급 | 착 상 내 용 | 비 고 |
|---|---|---|
| 장려상 | ○ 접수번호 : 1338<br>— 보안등 계약전력 변경<br>○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중 50 W 고압나트륨등의 안정기 소모전력이 10 W이내로서 계약전력 ( 나트륨W수+가산W수 ) 의 가산W수를 10 W로 적용받아야하나 한국전력공사 공급규정상 100 W이하는 일률적으로 20 W의 가산W수를 적용토록 되어있어 과다한 전력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바<br>○ 한국전력공사 공급규정을 고압나트륨등 50 W이하는 10 W의 가산W수를 적용할수 있도록 개정건의 하여 50 W고압나트륨등의 합리적인 전력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br>( 기대효과 )<br>○ 계약전력변경으로 전력요금절감 ( 년간 195,827 천원 )<br>착상자 : 구로구 토목과 지방전기기사 강성구<br>구로구 토목과 지방전기기사보 차재광 | 시장표창및 시상금 30 만원 |
| 장려상 | ○ 접수번호 : 23<br>— 하수처리장 최초침전기 스컴덩어리 형성방지를 위한 제거장치 보완<br>○ 탄천하수처리장의 최초침전지에 유입되는 하수에 작은협잡물, 비닐조각, 머리카락등이 포함되어 있어 스컴 ( 부유물 ) 과 함께 덩어리를 형성 부유물 제거기의 | 시장표창및 시상금 30 만원 |

| 착상등급 | 착 상 내 용 | 비 고 |
|---|---|---|
| |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바<br>o 최초침전지에 하수가 유입되는 수로 4개소에 머리카락 및 협잡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14‰이동용 bar screen)을 설치하여 스컴멍어리 형성방지 (기대효과)<br>o 스컴멍어리 형성방지로 부유물 제거기 고장예방<br>o 스컴멍어리 제거 일용인부 예산절감(년간 13,267천원)<br>· 착상자 : 탄천하수처리장 지방전기기원 최태용 | |
| 노력상 | o 접수번호 : 1299<br>— 집합건물의 대지권 소유자 변경신청서 서식통폐합<br>o 토지대장및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소, 성명변경신청시 등기부등본 1통씩을 각각 첨부 건축물관리대장은 시민봉사실에 토지대장은 지적과에 변경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 정리하고 있는바<br>o 집합건물(연립주택, 다세대, 아파트등)은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두서식을 통합한 "소유권 정리신청서 (집합건물의 대지권 및 건물)"를 신설 등기부등본 1통을 첨부 시민봉사실에 신청하면 건축물관리대장 정리후 지적과에 송부 토지대장 정리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br>(기대효과)<br>o 민원인 불편해소로 대민봉사 질적향상<br>착상자 : 종로구 지적과 지방지적기사보 조생호 | · 시장표창및 시상금 10만원 |
| 노력상 | o 접수번호 : 1312<br>— 누수복구 및 월동장비 수리제도 개선<br>o 구청 및 수도관리 사업소의 누수복구 및 월동장비수리를 위하여 수리비를 산출 본청에 예산배정을 요청하면 본청에서는 구청 및 사업소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일괄 조정 년 1-2회 배정하여 장비를 수리하고 있으나 소액으로 수리업체 선정이 어렵고 적기수리가 곤란한바<br>o 고장수리업체를 본청에서 단가계약으로 2-3 개소를 지정하여 구청, 사업소의 수리요구에 의해 지역별로 수시 수리후 청구에 의해 수리비 지출토록 개선 | 시장표창및 시상금 10만원 |

| 착상등급 | 착　　상　　내　　용 | 비　고 |
|---|---|---|
| | (기대효과)<br>○예산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급수대책 만전<br>• 착상자 : 상하수국 급수과 지방토목기사보 전용완 | |
| 노 력 상 | ○접수번호 : 1331<br>직원복무관리제도 개선<br>○출근부폐지 ( 88.5.1 ) 이후 실, 과단위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직원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나 기록유지상태가 미흡하고 개인별 근무상태파악이 어려운바<br>○"개인별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휴가, 결근, 지각등 특기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전보시 인사기록카드에 첨부 송부하여 직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함<br>(기대효과)<br>○개인별 근무실태 확인으로 복무기강 확립<br>○휴가의 적절한 활용유도및 향후 휴가 미실시자 수당 근거자료로 활용<br>• 착상자 : 내무국 인사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춘 길<br>〃 〃 지방행정주사 박 대 규 | 시장표창및<br>시상금<br>10 만원 |
| 노 력 상 | ○접수번호 : 1343<br>-노외주차장허가와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설치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br>○노외주차장 시설의 설치허가 ( 도시정비과 ) 및 노외주차장 진입 출입시설 설치허가 ( 건설관리과 ) 가 이원화되어있어 주차장 허가후 진입출입시설허가시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에 위반되거나 교통공안상 경찰협의결과 불가능지역으로 판단되어 불허가되는 사례가 있는바<br>○노외주차장 시설설치허가시 노외주차장 진출입시설 설치인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설치허가에 대하 유관부서 ( 건설관리과, 경찰서 ) 협의를 먼저 거친후 노외주차장을 허가할수 있도록 개선<br>(기대효과)<br>○민원절차 간소화로 업무 능률향상 | 시장표창및<br>시상금<br>10 만원 |

| 착상등급 | 착 상 내 용 | 비 고 |
|---|---|---|
| | ○행정의 신뢰성 제고<br>• 착상자 : 성동구 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박문규 | |
| 노 력 상 | ○접수번호 69<br>- 통합공과금 민원해소및 업무간소화<br>○수도양수기 교체시 수도관리과에서 통보되는 양수기교체 의뢰결과 통보서에 의해 각동에서 계량기검침부를 정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지서 발급후 통보시 잘못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br>○다세대, 연립, 상가등와 신축건축물에 대한 양수기 설치시 번지별로 같은 장소에 여러개의 양수기를 설치하고 있어 해당수용가 확인이 곤란한바<br>○양수기 신규 또는 교체설치시 설치사유, 종, 호수, 설치일자, 철거지침, 설치지침등이기재된 스티카를 제작 양수기 투명에 부착토록하여 검침이 용이하도록 개선<br>( 기대효과 )<br>○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착오요금 부과방지<br>○수용가별 양수기 확인 용이<br>• 착상자 : 도봉구 미아3동 지방행정서기 장관상 | ○시장표창 및시상금 10 만원 |

**착 상 조 치 요 령**

1. 착상실시
   - ○근 거 :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 ○채택된 착상은 즉시 실시토록 하되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관계기관 협의 또는건의하여 .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할것.
   - ○결과보고 : 착상의 실시결과 및 효과를 89.8.31까지 별지 서식에 의거 보고
2. 착상관리기록부 비치
   - ○근 거 :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영규정 제 21조
   - ○정리요령 : 당해부서에서는 1부를 작성 보관하고 사본1부를 시정개발 담당관 참조 제출
   - ○보고서식 : 착상제도 운영규정 별지 4호서식

## 착 상 실 시 현 황

| 착 상 제 목 | 실시년월일 | 실 시 현 황 | | 비 고 |
|---|---|---|---|---|
| | | 완 전 실 시 | 일 부 실 시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16 호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및해제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및 동보호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89. 5.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목록

| 종 별 | 지정번호 | 명 칭 | 지정물건 | 소 재 지 | 구조및규모 | 관 리 자 |
|---|---|---|---|---|---|---|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제71호 | 구제일은행 본점 | 1 동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53번지 | 철 골 철근콘크리트 2,129 명 | 제일은행㈜ |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해제 목록

| 종 별 | 지정번호 | 명 칭 | 지정물건 | 소 재 지 | 규 격 | 해제사유 |
|---|---|---|---|---|---|---|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제52호 | 승 가 사 승가대사상 | 1 구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1번지 | 높이 100 cm 폭 92 cm | 89. 4.10 보물제1000호로 지정 |

## ◎서울특별시고시제 244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중 건설부 고시제104호(89.3.14) 및 건설부 고시 232호(89.5.10)로 결정고시된 방산근린공원과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1호 마목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 5. 3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조서

| 공원명 | 구 분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 방 산 | 근린공원 | 중구 을지로5가 40-3 외 7필지 | 16,734.6 | 신 규 |
| 서대문 독립공원 | " | 서대문구 현저동 101 번지일대 | 97,377.3 | 신 규 |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중구청 도시정비과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끝.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35 호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0호(89. 3.6)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1호(89.3.25)로 지적승인된 응암, 한신가압장 통폐합공사부지로 은평구 응암동 285-1일대에 도시계획사업(수도)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수도공사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5. 30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람 개 요 -

가. 사업시행지 : 은평구 응암동 285-1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수도)
다. 사업규모 : 가압장시설(1개소)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89. 5-'89.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 ◎서울특별시공고제 439 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폐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5.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명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장수관인 등록
   · 〃 〃 수입금출납원인 등록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장수관인 등록
   · 〃 〃 수입금출납원인 등록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장수관인 폐기
   · 〃 〃 수입금출납원인 폐기
2. 사용개시(폐기)일자 : '89.5.4 (폐기일자는 '89.5.3)
3. 공인의 인영

| | 신규 | |
|---|---|---|
| 인영 | | |
| 공인명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장수관 인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

| | 신규 | |
|---|---|---|
| 인영 | | |
| 공인명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장수관 인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

| | 체기 | |
|---|---|---|
| 인영 | | |
| 공인명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장수관 인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

## ◎ 서울특별시공고제 448 호

### 마포로제 2 구역제 1 - 1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345 호 (79.9.21)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 412 호 (8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5 호 (86.5.1) 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마포로 제 2 구역 제 1 - 1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인 효성중공업㈜ 대표 김인환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읍니다.

1989. 5.3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 제 2 구역 제 1-1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마포구 공덕동 396-1 번지 일대외 39 필지
 ○ 시행면적 : 3,342 ㎡
다. 사업시행예정자 : 영등포구 당산동 5 가 4 번지
 효성중공업㈜ 대표 김인환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마. 공람기간 : '89.5.30 ~ '89.6.29
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731-6358-9)

## ◎ 서울특별시공고제 449 호

을지로 2 가구역 제 15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7.6.29)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 257 호 (78. 9. 5)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0 호 (89.5.19) 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을지로 2 가구역 제 15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인 ㈜선경 대표 이순석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읍니다.

1989. 5.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을지로 2 가구역 제 15 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중구 을지로 2 가 36-1 외 32 필지
3) 시행면적 : 7,109.5 ㎡
4) 시행자 : 수원시 권선구 평동 4 번지 ㈜선경 대표 이순석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중구 을지로 2 가 36-1
6) 시행기간 : 89.7.1 ~ 92.12.31
7)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8) 공람기간 : 89.5.30 ~ 89. 6.29
9)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 ◎ 서울특별시공고제 454 호

**마포로제4 구역제 6 - 1 지구재개발사업 시 행 인 가 를 위 한 공 람 공 고**

1. 건설부 고시 제 345 호 (79.9.21)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412호 (8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9 호 (89.5.26) 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마포로 제 4 구역 제 6-1 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 발기인 대표 정석환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읍니다.

1989. 5.3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 제 4 구역 제 6-1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대문구 충정로 2 가 164-11 번지일대 ( 17 필지 )
- 시행면적 : 2,731.2 ㎡

다. 사업시행예정자 : 마포로 제 4 구역 6-1 지구 재개발사업조합 ( 가칭 ) 발기인 대표 정석환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정관

마. 공람기간 : 89.5.30 ~ 89.6.29

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731-6358-9)

## ◎ 서울특별시공고제 455 호

**신 문 로제 2 구역제 3 지구 재 개 발사업 시 행 인 가 를 위 한 공 람 공 고**

1. 건설부 고시 제317호 (83.9.30)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 234 호 (84. 4.2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9 호 (89. 5.26) 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신문로 제 2 구역 제 3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 소유자인 참조종합건설㈜ 대표 김화섭, ㈜ 기림개발 대표 이영언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관계서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읍니다.

1989. 5.3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명칭 : 신문로 제 2 구역제 3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종로구 신문로 1 가 197번지일대 57 필지
 ○ 시행면적 : 5,368.7 ㎡
다. 사업시행예정자
 경남양산군 양산읍북부동 148-35 창조종합건설㈜ 대표 김화섭
 중구 장교동 1 ㈜ 거림개발 대표 이영언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및 규약
마. 공람기간 : 89.5.30-89.6.29
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 ◎서울특별시공고제 456 호

### K.S 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9. 5.26
서 울 특 별 시 장

업 체 명 : 삼진화학공업사
대 표 자 : 김용식
주 소 :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 1 동 1140-3
허가번호 : 제 4672 호
규격번호 : KSC 8105
규 격 명 : 휴대전등
종류등급 : 허가된 전 종류및 등급
취소일자 : 1989.5
취소사유 : 생산중단 1 년이상및 폐업

## ◎서울특별시공고제 467 호

### 서소문구역 제 4 지구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783 호(84.12.2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41 호(89.1.26)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 4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구)대경빌딩 대표 김종군외 1 인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 15 조및 동법시행령제 58 조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9. 6. 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내용

| 구 분 | 기 정 | 변 경 |
|---|---|---|
| ○ 사업시행기간 | 84.12.26~89. 6.30 | 84.12.26~89.12.31 |
| ○ 기타사항 | 변 경 없 음 | (변경전인가내용과동일) |

나. 변경사유 : 시행구역내 공공용지 설치대상인 (국지)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수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기

다.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라.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 구 고 시

## ◎성동구고시제7호

### 민영주택건설사업

서울특별시고시제 102 호 (87.2.18) 호로 고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제 1 항및 동법시행규칙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5.30

성 동 구 청 장

(변경전)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건국대학교 직장주택조합 외 2 개조합
3. 사업시행지의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울특별시성동구자양동 520-2 외 4 필지
   나. 대 적 : 14,079.77 ㎡
   다. 건축연면적 : 35,318.91 ㎡
   라. 규 모 : 아파트 15 층 3 동 405 세대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87.2-1988.6.30
5.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

( 단위 : m )

| 구분 | 등급 | 유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점 | 종점 | 비고 |
|---|---|---|---|---|---|---|---|---|
| 기정 | 소로 | 3 | 1 | 2-4 | 65 | 자양동520-2 | 자양동520-2 | |
| 변경 | 〃 | 〃 | 〃 | 6 | 65 | 〃 | | 폭원확장 ( 신설 ) |
| 기정 | 〃 | 〃 | 2 | 3-5 | 45 | 〃 | 자양동581-2 | |
| 변경 | 〃 | 〃 | 2 | 6 | 45 | 〃 | | 폭원확장 ( 신설 ) |
| 기정 | 〃 | 〃 | 3 | 8 | 59 | 자양동520-5 | 자양동520-2 | |
| 변경 | 〃 | 3 | 3 | 8 | 59 | 〃 | | 폐　　지 |

( 변경후 )

1. 사 업 명 : 변경없음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변경없음
   나. 대 지 면 적 : 13,919.0 ㎡
   다. 건축연면적 : 변경없음
   라. 규　　모 :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 1987.2-1989.7.30
5.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

( 단위 : m )

| 구분 | 등급 | 유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점 | 종점 | 비고 |
|---|---|---|---|---|---|---|---|---|
| 기정 | 소로 | 3 | 1 | 2-4 | 65 | 자양동520-2 | 자양동520-2 | |
| 변경 | 〃 | 〃 | 1 | 6 | 65 | 〃 | | 폭원확장 ( 신설 ) |
| 기정 | 〃 | 〃 | 2 | 3-5 | 45 | 〃 | 자양동520-2 | |
| 변경 | 〃 | 〃 | 2 | 6 | 45 | 〃 | 〃 | 폭원확장 ( 신설 ) |
| 기정 | 〃 | 〃 | 3 | 8 | 59 | 자양동520-5 | 자양동520-2 | |
| 변경 | 〃 | 〃 | 3 | 8 | 59 | 〃 | 〃 | 폐　　지 |
| 기정 | 〃 | 〃 | 4 | 8 | 26 | 자양동520-17 | 자양동452 | |
| 변경 | 〃 | 〃 | 4 | 8 | 26 | 〃 | 〃 | 추 가 폐 지 |

## ◎송파구고시제 8 호

**도시계획사업 ( 시장 )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821 호 (88.10.6) 로 도시계획사업 변경시행 허가된 관내 삼실동 40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 시장 ) 변경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9.5.30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파구 잠실동 40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 ( 시장 ) 변경 시행
- 명칭 : 한양유통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3,971.8 ㎡
- 건축면적 - 8,142.74 ㎡
- 건축연면적 - 당초 : 43,166,418 ㎡
  - 변경 : 42,660,298 ㎡ (감506,120㎡)

라. 사업시행자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 번지 한양유통㈜ 김호연

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88.11.1-89. 5.31
- 변경 : 88.11.1-89.12.31

## ◎영등포구고시제 11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5.30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2. 사업주체
진로그룹 직장주택조합 한봉환의 149명
상용투자증권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정철재외 109 명
대한교육보험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이종국외 72 명
한국방송공사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임정규외 34 명
국민신용카드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김재홍외 35 명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최원식외 22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한영준외 25 명
한국전력남부지점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국세용외 20 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0-7 번지외 8 필지
나. 대지면적 : 21,472.15 ㎡
다. 건축연면적 : 50,154.51 ㎡
라. 규모 : 13-15 층 4 동 476 세대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 1989.5. -1990.12.31

## ◎구로구고시제 42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820 호 ( 88.11.15 )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39호 ( 88.12.29 ) 로 인가 고시된 도시계

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23

구 로 구 청 장

-고 시 내 용-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212-16~시흥동220-139 (변동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시흥동 220-173간 도로개설공사 (변동없음)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6-9m, L=249m, 하수도D=450㎜, L=255m (변동없음)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동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89.12.31 (변동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토지조서 (변경없음), 물건조서 (별첨참조)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건물조서만 변경)

## ◎구로구고시제43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30호 (89.4.26)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23

구 로 구 청 장

-고 시 문-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385~구로동 685-46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구일고등학교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10m, L=150m

하수도 D=450-600㎜, L=29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 4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9호(89.4.26)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23
구 로 구 청 장

-고 시 문-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0-66 의 7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개봉동 70-66 의 7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m, L=10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 4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32호(89.4.26)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23
구 로 구 청 장

- 고 시 문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3-124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고척동 103-124 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 = 15 m, L = 300 m
   하 수 도 D = 600 ㎜, L = 30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46호

도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제31호(89.4.26)로 공람 공고한 도시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5.23
구 로 구 청 장

- 고 시 문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76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고척동 63-76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 20 m
   L = 3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8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47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제33호(89 4.26)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5.23

구 로 구 청 장

- 고 시 문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9-36~551-17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구로5동 551-570 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8m L=9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89.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 구 공 고

## ◎강남구공고제 16 호

### 관인재교부공고

관인규정 제8조 및 강남구 관인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 및 폐기된 관인을 관인규정 제9조 및 강남구 관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5.30

강 남 구 청 장

1. 관인사용개시일 : 1989.5.30 09:00
2. 승인인영

| | | |
|---|---|---|
| 인영 | 신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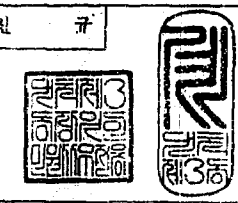 |
| | 폐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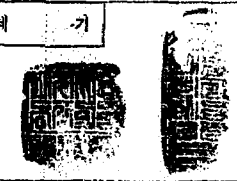 |
| 공인명 | 대치제3동장외인 (민원사무 관용) 및 제인 | |

## ◎동작구공고제26호

### 관인사용신조및폐기공고

우리구 사당제3동 민원사무전용관인 및 제인을 관인신조(개각)승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5.30
동 작 구 청 장

1. 관인명
   ○ 관인 : 사당제3동장인민원사무전용
   ○ 제인 : 사당제3동민원사무전용
2. 사용개시일 : 1989.6.1
3. 관인 및 제인인영

| | | |
|---|---|---|
| 인영 | 신 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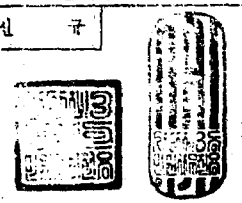 |
| | 폐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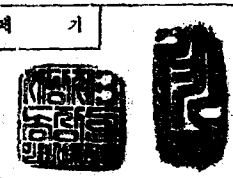 |
| 공인명 | 사당제3동장의 인 및 제인 (민원사무 전용) | |

## ◎양천구공고제35호

### 관인사용신조및폐기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인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신고하고 동 규칙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5.
양 천 구 청 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89.6.1
2. 사용관인
   신월제7동장의직인
   신월제7동장인(민원사무전용)
   신월제7동제인
3. 폐기관인
   신월제4동동장의인(분소민원용)
   신월제4동제인(분소민원용)

| | | |
|---|---|---|
| 인영 | 신 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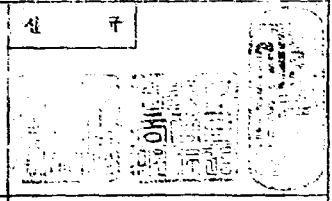 |
| 공인명 | 신월제7동장의 직인 및 제인 | |
| 인영 | 폐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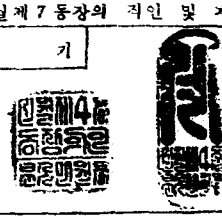 |
| 공인명 | 신월제4동장의 직인 및 제인 | |

## ◎ 중랑구 공고 제45호

### 관인사용승인 및 폐인공고

관인규정 제5조 및 중랑구 관인규칙 5조의 규칙에 의거 신조 및 개각한 관인 및 계인을 관인규정 제8조 및 관인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5.30

중 랑 구 청 장

| | 신 인 영 | | 구 인 영 | |
|---|---|---|---|---|
| 인영 | | | | |
| 공인명 | 면목제4동장인 (민원사무용) | 면목제4동계인 | 면목제4동장인 (민원사무용) | 면목제4동계인 |
| 인영 | | | | |
| 공인명 | 면목제5동계인 | 면목제6동장인 (민원사무용) | 면목제5동계인 | 면목제6동장인 (민원사무용) |
| 인영 | | | | |
| 공인명 | 면목제7동장인 (민원사무용) | 면목제7동계인 | 면목제7동장인 (민원사무용) | 면목제7동계인 |

| 인영 | 신 [illegible] 영 | | | |
|---|---|---|---|---|
| | | | | |
| 공인명 | 상봉제2동장인 (민원사무용) | 중화제3동장인 (일반사무용) | 중화제3동계인 | 중화제3동장인 (민원사무용) |
| 인영 | | | 구 연 영 | |
| | | | | |
| 공인명 | 망우제1동계인 | | 망우제1동계인 | 상봉제2동장인 (민원사무용) |

## ◎송파구 공고 제51호

### 관인사용승인공고

1989.6.1자 신설되는 3개동(오륜동, 가락제1동, 가락제2동) 관인 신조 사용을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 .

송 파 구 청 장

— 다 음 —

1. 관 인 명 : 신설동 3개동 일반사무용, 민원사무전용 관인 및 계인(오륜동, 가락제1동, 가락제2동)
2. 사용개시일 : 1989. 6. 1
3. 관인의인영 : 별첨

| | | | | | |
|---|---|---|---|---|---|
| 인영 | | | | | |
| 공인명 | 서울특별시송파구 오륜동 관인 | 서울특별시송파구 오륜동민원사무용 관인 | 서울특별시송파구 오륜동 제인 |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1동관인 |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1동민원사무용관인 |
| 인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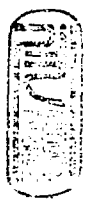 | | | | |
| 공인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관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1동 제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민원사무용 관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제인 | |

## ◎송파구 공고 제 52 호

송 파 구 청 장

관 인 폐 기 공 고

1989.6.1자 가락동, 방이민원분소의 관인폐기를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인규칙 제 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 .

-다 음-

1. 관 인 명 : 가락동 일반사무용관인, 민원사무전용 관인, 제인, 방이민원분소 민원사무전용 관인, 제인
2. 폐 기 일 시 : 1989.5.31. 18:00 시
3. 관인의인영 : 별첨

| 제인영 | | | | | |
|---|---|---|---|---|---|
| 공인명 |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동관인 |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동민원사무전용 관인 |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동 제인 |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이동 민원분소 민원사무전용관인 |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이동민원분소 제인 |

##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제56호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준공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44호(87.10.22) 동고시 제745호(87.10.24)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92호(87.11.11), 동고시 제28호(88. 4. 6), 동고시 제6호(89. 1.12)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 및 변경허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46-446일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준공하였기 도시계획법 제85조, 제5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30

관 악 구 청 장

- 다 음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46-446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새강원 외숙 건립 14,928㎡

다. 사업의 규모 : 시행면적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재단법인 새강원 장학회 이사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공 - 87.11.11
준공 - 89. 2.28

## ◎은평구공고제86호

### 관인교부(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제1동장, 갈현제2동장, 응암제1동장, 녹번동장의 관인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인 규칙

제5조에 의거 교부(재교부)승인하고 구 관인은 동규칙 제6조에 의거 폐기함을 관인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5.30

은 평 구 청 장

1. 교부(재교부)관인명
   - 갈현제1동장(일반사무용, 민원사무용, 계인)
   - 갈현제2동장(일반사무용, 민원사무용, 계인)
   - 응암제1동장(일반사무용, 민원사무용, 계인)
   - 녹번동장(민원사무용, 계인)
2. 사용개시일: '89. 6. 1
3. 관인 인영: 아래

| | | | | |
|---|---|---|---|---|
| 교부인영 | | | | |
| 공인명 | 갈현제1동장의 인 | 갈현 제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계인(갈현제1동) | 갈현제2동장의 인 |
| 교부인영 | | | | |
| 공인명 | 갈현제2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계인(갈현제2동장) | 응암제1동장의인 | 응암제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 교부인영 | | | | |
| 공인명 | 계인(응암1동) | 녹번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계 인(녹번동) | |

| | | | | |
|---|---|---|---|---|
| 제기인영 | | | | |
| 공인명 | 응암제1동장의 인 | 응암제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제 인 (응암1동) | 녹번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 제기인영 | | | | |
| 공인명 | 제 인 (녹번동) | 갈현동장의 인 | 갈현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제 인 (갈현동) |

◎서대문공고제 86 호

관 인 개 각 사 용

서대문구 산하 북아현 제1동 외 3개동의 동장 관인 및 제인을 개각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인 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5.30

서 대 문 구 청 장

1. 관인명
   가. 북아현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용) 및 제인
   나. 홍제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용) 및 제인
   다. 남가좌 제2동장의 인 (일반사무용) 및 제인
   라. 연희 제3동장의 인 (민원사무용) 및 제인
2. 사용개시일 : 1989. 6. 1 (목) 09:00

3. 개각 관인 인영

| | | | | |
|---|---|---|---|---|
| 구인영 | | | | |
| 신인영 | | | | |
| 관인명 | 북이현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전용) | 북이현 제1동의 계인 (민원사무전용) | 연희 제3동장의 인 (민원사무전용) | 연희 제3동의 계인 (민원사무전용) |
| 구인영 | | | | |
| 신인영 | | | | |
| 관인명 | 홍제 제1동장의 인 (민원사무전용) | 홍제 제1동의 계인 (민원사무전용) | 남가좌 제2 동장의 인 (일반사무용) | 남가좌 제2동장의 계인 (일반사무용) |

## 사 업 소 고 시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1 호

선 박 운 항 허 가 .

한강 구역내 선박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1989. 5.30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 선박운항허가 내용

| 점용허가자 | 점 용 위 치 | 점 용 목 적 | 점 용 내 역 |
|---|---|---|---|
| 성원해저(유) 권 중 도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388 -선 한강 | 수상스키(모타보트) 경영을 위한 선박 운항 | 선박(모타보트) 6척 |

○ 허 가 기 간 : '89. 5.20 ~ '89.10.31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2 호

선 박 운 항 허 가 고 시

한강 반포지구내 유선업 경영을 위한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고 같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1989. 5.30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 선박운항허가 내용

| 수 허 가 자 | 위 치 | 목 적 | 내 용 |
|---|---|---|---|
| 한강관리사업소장 최 주 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2번지선 앞 한강 |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 운항허가 | 보트 : 100 척 |

○ 허 가 기 간 : '89. 5.21 ~ '91.12.31

# 사 령

◎ 1989 년 5 월 20 일자 7 급 공 무 원 휴 직 령제 200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권 성 숙 |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부녀복지과 | 지방행정주사보 |

◎ 1989 년 5 월 23 일자 고 용 직 공 무 원 전 입 령제 201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김 영 혜 | 서울시에 전입을 명함. 지방타자원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 대통령 비서실 | 타 자 원 |

◎ 1989 년 5 월 22 일자 9 급 공 무 원 전 출 령제 203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장 연 모 | 전라남도 광양군 전출을 명함 | 서 대 문 구 | 지방행정서기보 |

◎ 1989 년 5 월 15 일자 인 사 발 령 통 지 령제 204 호

서울특별시
지방전기기좌 홍 순 우
전기기좌에 임함.
특허청 심사 4 국 정보통신심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대통령

◎ 1989 년 5 월 23 일자 기 능 직 공 무 원 면 직 령제 205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최 화 규 |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경찰국 교통과 | 지방운전원 ( 10 등급 ) |

◎ 1989 년 5 월 25 일자 7 급이하기술직공무원전보 령제 206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이 용 건 | 총 무 과 | 서 초 구 | 지방건축기사보 |
| 김 부 성 | 동 작 구 | 종합건설본부 | 〃 |
| 여 운 구 | 〃 | 〃 | 〃 |

6 급이하기술직공무원전보 령제 207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박 찬 학 | 도 로 과 | 올림픽토목담당관 | 지방토목기사 |
| 박 장 현 | 〃 | 종 로 구 | 지방토목기사보 |

기 능 직 공 무 원 전 보 령제 208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강 항 구 | 문화담당관 | 서부위생처리장 | 지방기계장 ( 7 등급 ) |
| 이 용 욱 | 녹지사업소 | 〃 | 〃 |
| 황 춘 | 마 포 구 | 〃 | 지방기계장 ( 6 등급 ) |
| 이 승 영 | 암사수원지사무소 | 안양하수처리장 | 지방기계원 ( 8 등급 ) |
| 김 명 훈 | 청동로수원지사무소 | 〃 | 〃 |

◎ 1989 년 6 월 1 일자 기 능 직 공 무 원 신 규 임 용 령제 209 호

| 성 명 | 발령부서 | 발령호봉 | 발 령 직 급 | 비 고 |
|---|---|---|---|---|
| 백 관 섭 | 소방본부 | 3 호봉 | 지방전기원시보 ( 8 등급 ) | 신 규 |
| 배 영 종 | 문화담당관 | 2 호봉 | 〃 | 〃 |

◎ 1989 년 5 월 25 일자 6 급보건직공무원파견 령제 210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윤 영 진 | 서울지방검찰청 파견 ( '89.5.25-'90.5.24 ) | 내 무 국 | 지방보건기사 |

◎ 1989 년 5 월 23 일자 인 사 발 령 통 지 령제 211 호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조 정 희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근무를 명함.

1989 년 5 월 23 일 대통령

부녀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1989 년 5 월 23 일 서울특별시장

◎ 1989 년 5 월 29 일자 6 급이하공무원특별임용 령제 212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이 안 노 | 행정주사 | 용 산 구 | 지방행정주사 |
| 임 낙 길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북 구 | 행정주사보 |
| 이 종 하 | 행정주사보 | 〃 | 지방행정주사보 |
| 김 은 순 | 〃 | 〃 | 〃 |
| 김 용 석 | 행정서기 | 〃 | 지방행정서기 |
| 양 기 란 | 행정주사보 | 동 대 문 구 | 지방행정주사보 |
| 송 명 자 | 〃 | 〃 | 〃 |
| 한 병 연 | 〃 | 강 서 구 | 〃 |
| 김 춘 웅 | 행정서기 | 〃 | 지방행정서기 |

◎ 1989 년 5 월 30 일자 고 용 직 공 무 원 전 보 령제 213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유 무 균 | 녹 지 사 업 소 | 서부위생처리장 | 지방기계보조원 |

◎ 1989 년 5 월 30 일자 6 급 이 하 공 무 원 전 보 령제 215 호

| 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이 석 환 | 영 등 포 구 | 관 악 구 | 지방행정주사보 |
| 김 호 영 | 〃 | 서울대공원관리(사) | 〃 |
| 정 수 현 | 동 작 구 | 영 등 포 구 | 〃 |
| 김 광 복 | 구 로 구 | 〃 | 지방행정서기 |

# 공 지 사 항

## 대 표 전 화 변 경 안 내

○ 기 관 명 : 서울시설관리공단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능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내)
○ 대표전화 : 475-8471 ~ 3

| | | |
|---|---|---|
| 비 서 실 | : | 475-8451 |
| 총무이사 | : | 475-8452 |
| 영업이사 | : | 475-8453 |
| 감 사 | : | 475-8454 |
| 기획실 ( 구내 ) | : | 310-316 |
| 총무부 ( 〃 ) | : | 318-329 |
| 영업부 ( 〃 ) | : | 330-339 |
| 관리부 ( 〃 ) | : | 340-348 |
| 검사역실 ( 〃 ) | : | 360-364 |